국회에서 의결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이 재 명 인

2026년 9월 29일

국 무 총 리 한 성 숙

국 무 위 원
행정안전부 장관 윤 호 중
(법무부 소관)

◉법률 제22008호

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

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(광역공소청,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, 중대범죄수사청”으로, 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”를 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, 국방부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단서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, 중대범죄수사청”으로, “해양경찰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”를 “해양경찰청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국방부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대검찰청 차장검사”를 “공소청 차장검사, 중대범죄수사청 차장”으로, “해양경찰청 차장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”을 “해양경찰청 차장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및 국방부차관”으로 한다.

제17조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, 중대범죄수사청”으로, “해양경찰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”를 “해양경찰청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국방부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제2호, 제5조제1항 단서,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의 개정규정 중 국방부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중대범죄수사청의 시스템 공동사용 등에 관한 특례)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 및 제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은 중대범죄수사청의 독자적인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경찰청의 시스템과 그 부대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의 형사사법업무에 속하는 부분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운영·관리하는 것으로 본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「검찰청법」 폐지와 「공소청법」 및 「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,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「형사소송법」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,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,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. 이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